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55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 김소희 · 김예지 · 김상훈

권영세 · 임종득 · 이종배

김대식 • 이달희 • 최보윤

박덕흠 • 박대출 • 우재준

이인선 · 최형두 · 김형동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(IPCC)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.5℃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,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.

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,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 여 추진중임.

하지만,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,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,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.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,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미국, 중국, 일본,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 음. 우리나라도 철강, 조선, 석유화학, 자동차,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 점임.

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 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 려고 함.

주요내용

가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 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 제적・환경적・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 의 육성・촉진・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나. 국가 등의 책무(안 제3조)

- 1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.
- 2)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단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.

다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
- 1)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- 2)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

라. 기후금융 촉진위원회(안 제6조)

- 1)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둠.
- 2)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둠(안 제6조).

마. 공공금융지원(안 제7조).

- 1)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
- 2)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

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음.

바. 금융회사의 책무(안 제8조)

- 1)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·목표·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함.
- 2)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.
- 3)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. 사. 채권발행(안 제9조)
 - 1)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,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.
 - 2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아.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·환경적·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의 육성·촉진·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기후위기"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.
- 2. "탄소중립"이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.
- 3. "녹색성장"이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을 말한다.
- 4. "기후금융"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 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, 다음의 활동에 대해 대통령령으로

- 정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
- 나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 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활동
- 다. 철강, 조선, 석유화학, 자동차,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 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
- 라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
- 5. "금융회사"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6. "녹색분류체계"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0조의4제2 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립 된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 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단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후금융 촉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
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기후금융의 촉진 등

- 제5조(기본계획) ①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 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
 - 2.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
 - 3.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
 - 4.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
 - 5.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기후금융 촉진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

둔다.

-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
- 3.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
- 2. 기후금융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
-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.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 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공공금융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 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.
 - 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
- 2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3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- 4.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.
- 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- 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- 3.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③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 실적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8조(금융회사의 책무 등) ①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·목표·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, 전담 임 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채권발행) ①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, 공공기관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-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제1항의 채권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의 채권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(이자소득) 및 「법인세법」 제73조(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) 대상에서 제외된다. 다만,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.
- 제10조(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)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 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 다.

제3장 보칙

제11조(자료제출 등의 요구) ①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하여
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후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국회 보고)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2028년에 수립한다.